## 전남대학교 특별학기 운영 규정



[시행 2017.10.30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622호, 2017.10.30, 제정]

전남대학교 062-530-5114

## 전남대학교 특별학기 운영규정

제정 2017. 10. 30. 제162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 및 제40조에 따라 특별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학기 정의) "특별학기"라 함은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계절학기와는 별도로 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개설, 운영하는 학기를 말한다.

제3조(교과목 개설) 교과목 개설은 학과(부) 등 신청에 의하여 총장이 승인한다.

- **제4조**(수강신청) ① 특별학기 수강신청은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업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총장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
  - ② 특별학기 수업은 수강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질병 및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수업일수 및 학점) ①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한다.

② 특별학기에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·실기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제6조(수강학점) 매 특별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.

제7조(등록금) 특별학기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1622호,2017.10.30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